의료폐기물 배출·처리업체 설명회

2018. 4. 30.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차 례

1 의료폐기물의 분류 체계

2 폐기물 처리계획 인·허가 안내

- 올바로 시스템 관련 -

3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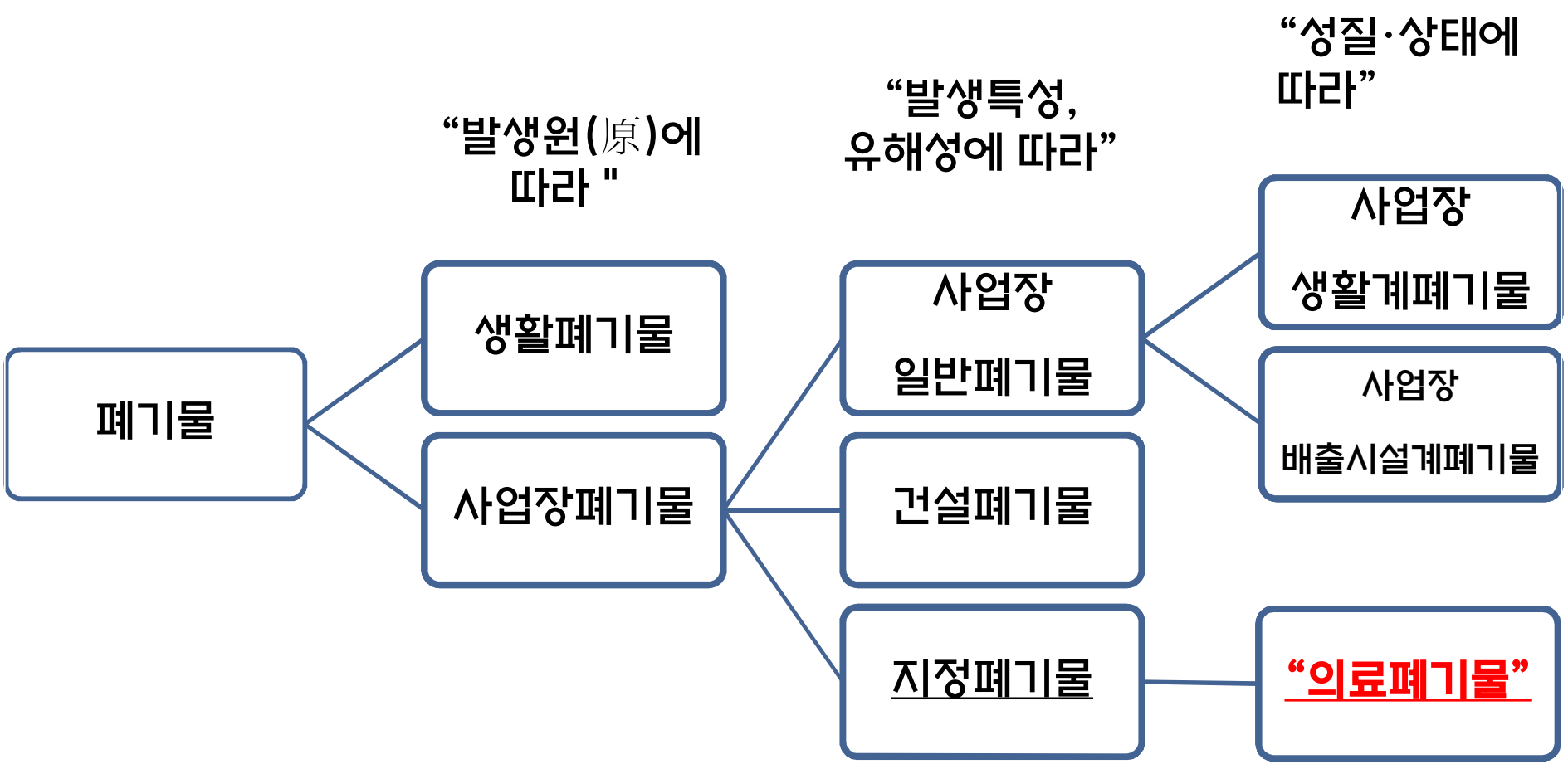
4 의료폐기물 관련 질의응답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 관리의 기본원칙

- 발생최소화의 원칙: 폐기물의 발생, 배출을 억제 또는 최소화
- 발생지처리의 원칙: 사람이나 주변환경의 위해우려인자의 감소를 위한 노력 등 적절한 조치 이행
- 오염자부담의 원칙: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환경복원의 책임을 지며, 그 비용을 부담
- 폐기물자원화우선의 원칙: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 자원생산성을 향상시킴

폐기물의 분류체계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의 정의

- 폐기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대기, 폐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종류		내용
격리의료폐기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관련한 환자의 의료행위에서 발생된 일체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병리계폐기물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손상성폐기물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생물·화학폐기물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혈액오염폐기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의료폐기물의 발생기관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원, 병원 등)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2조 제3호의 혈액원
5. 「검역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 (의·치·한·약·수의학 관련)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 (의·치·한·약·수의학 관련)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 (의·치·한·약·수의학 관련)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 ·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의료폐기물의 발생기관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m² 이상 의무시설

13. 「국군의무사령부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의료폐기물 중 태반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

- 의료폐기물은 제25조의2 제6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만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의 종류 및 재질>

종류		재질
봉투형 용기		합성수지류(폴리에틸렌)
상자형 용기	외부용기	골판지류
		합성수지류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내부주머니	합성수지류 (폴리에틸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도형의 모양	의료폐기물의 종류		전용용기 종류	도형의 색상
	격리의료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붉은색
	위해의료폐기물 (재활용태반제외) 및 일반의료폐기물	조직물류 (치아제외),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폐기물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노란색
		기타	봉투형용기	검정색
			골판지류 상자형 용기	노란색
	재활용하는 태반		합성수지류 상자형 용기	녹색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종 류	보관기간	비 고
격리의료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 (손상성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의료폐기물	15일	
위해의료폐기물(손상성)	30일	
조직물류폐기물(치아)	60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1. 폐기물 종류 :	2. 총 보관량 : Kg
3. 보관기간 :	4. 관리책임자 :
5. 취급 시 주의사항 ○ 보관 시 : ○ 운반 시 :	
6. 운반장소 :	

-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 표지판의 규격 : 가로 60cm 이상 × 세로 40cm 이상
  냉장시설은 가로 30cm 이상 × 세로 20cm 이상
- 표지의 색깔 :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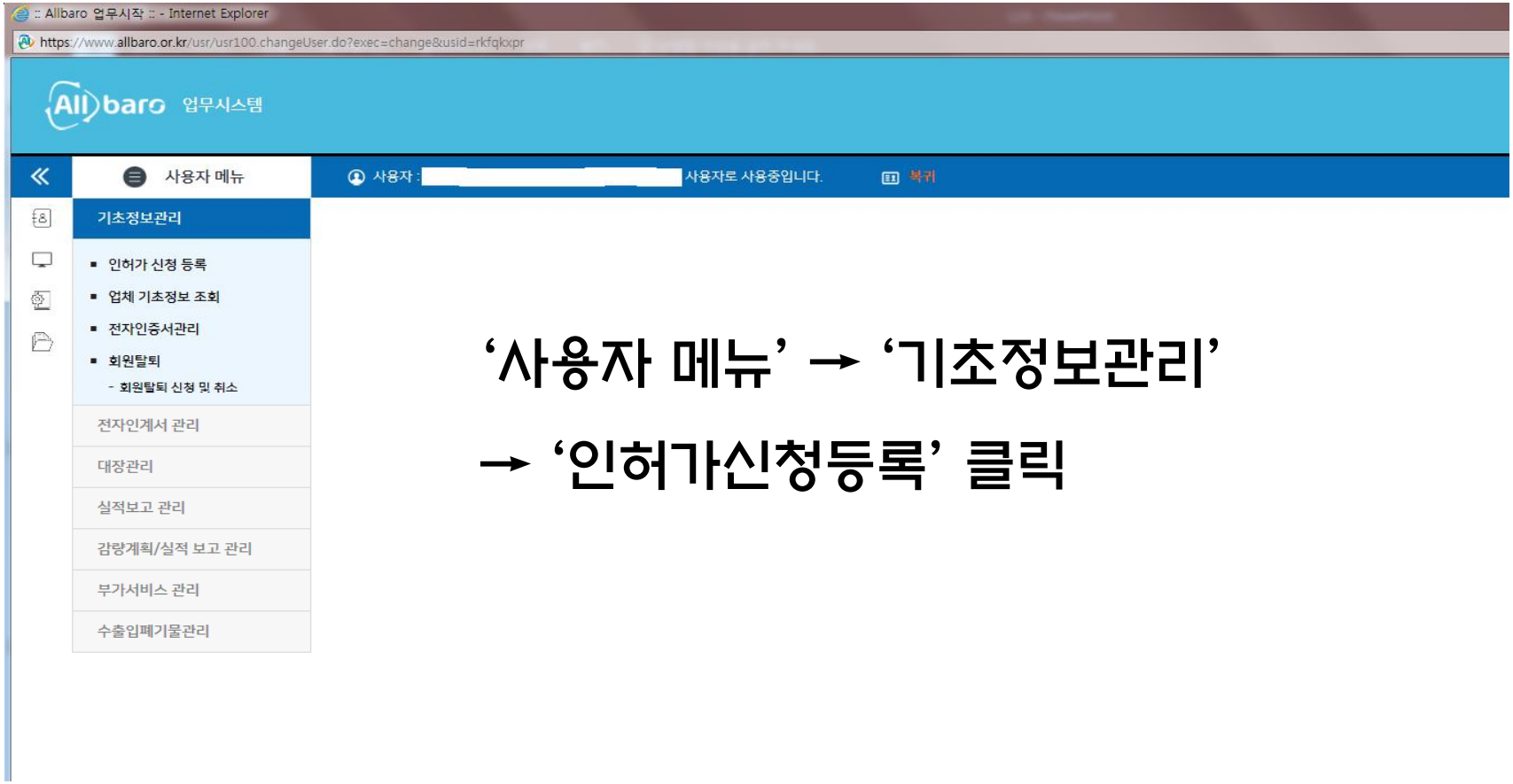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처리계획 인·허가 절차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처리계획 인·허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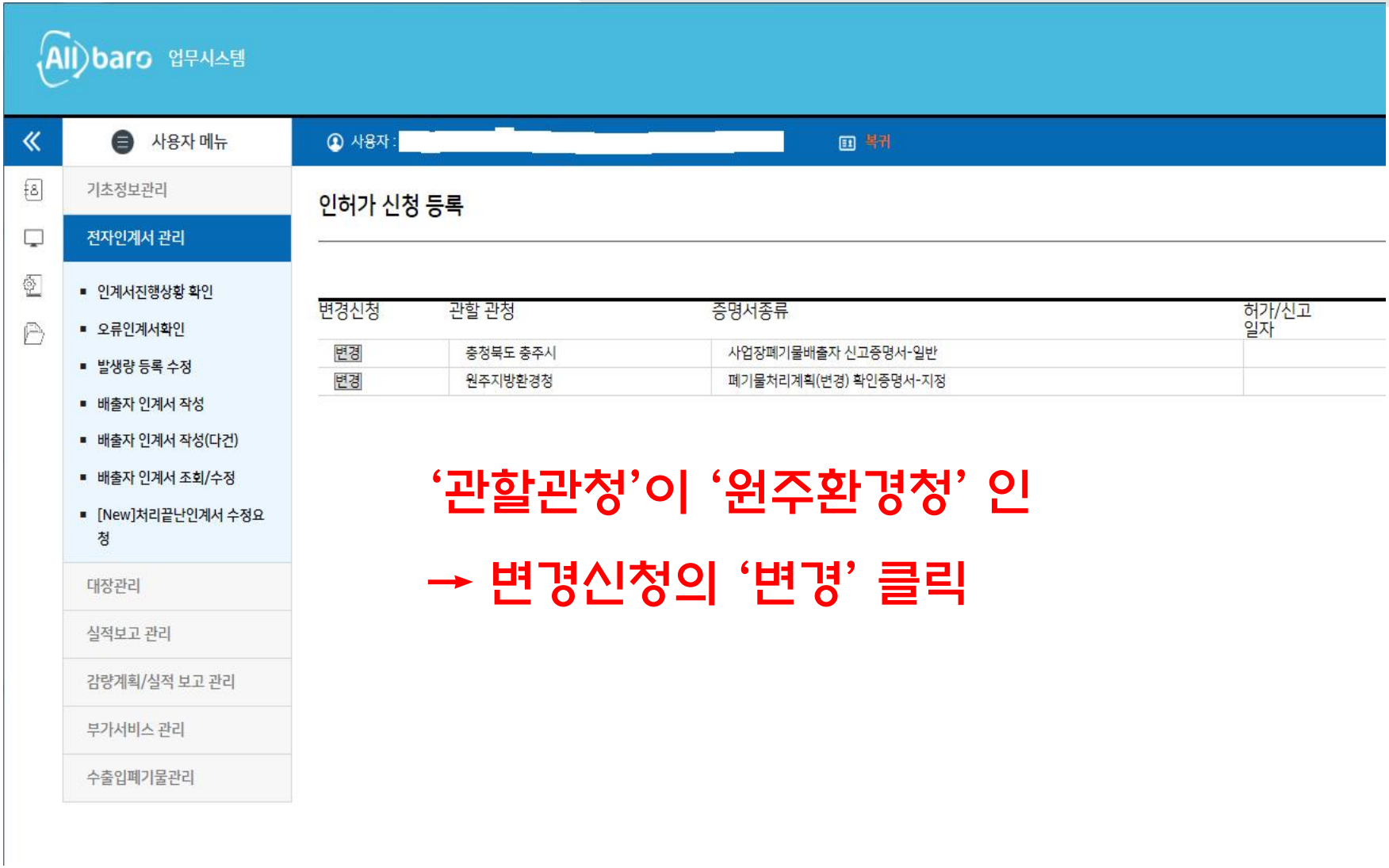


‘사용자 메뉴’ → ‘기초정보관리’

→ ‘인허가신청등록’ 클릭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처리계획 인·허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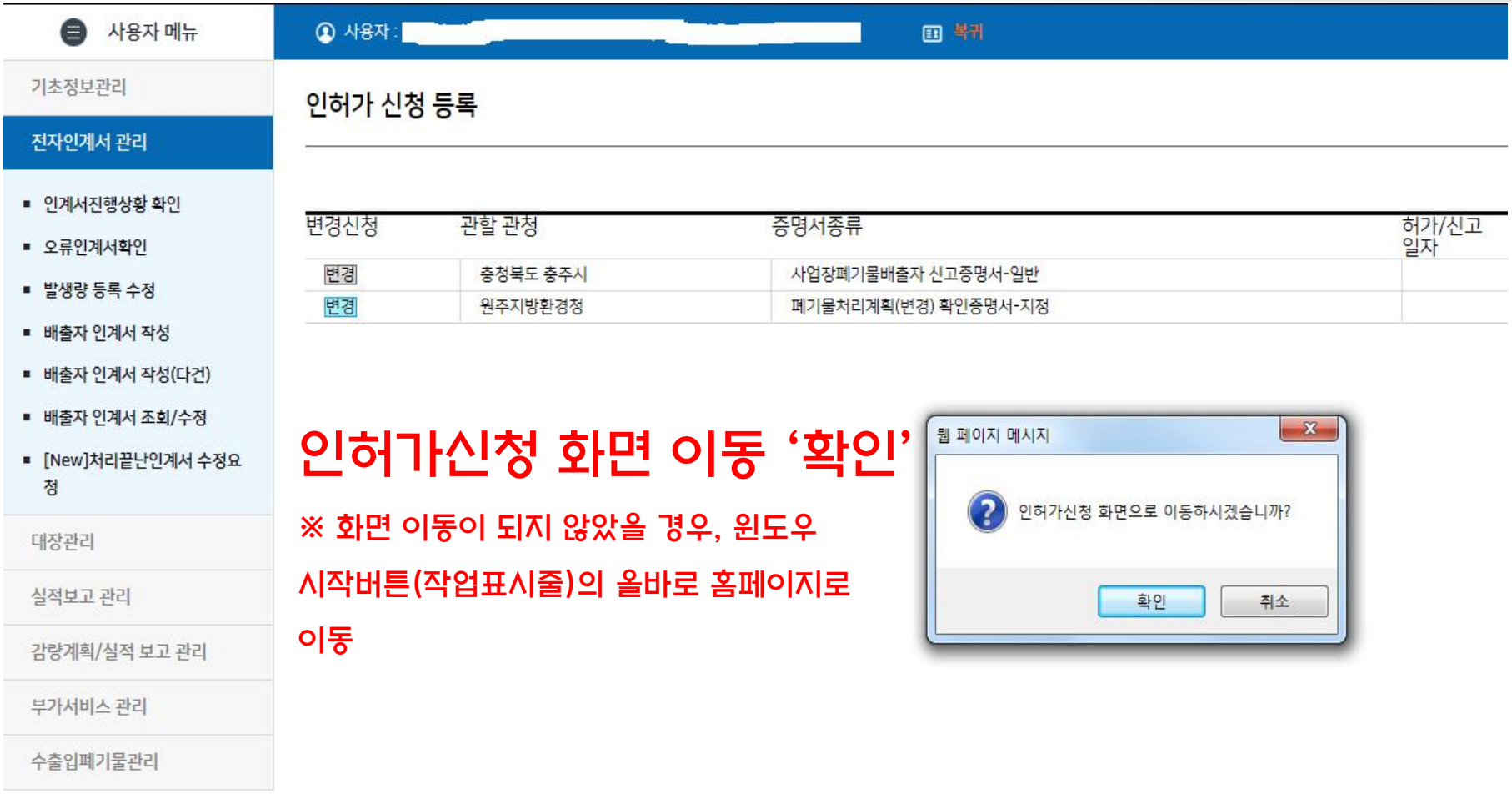


‘관할관청’이 ‘원주환경청’ 인

→ 변경신청의 ‘변경’ 클릭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처리계획 인·허가 절차



인허가신청 화면 이동 '확인'

※ 화면 이동이 되지 않았을 경우, 윈도우 시작버튼(작업표시줄)의 올바로 홈페이지로 이동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처리계획 인·허가 절차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처리계획 인·허가 절차

제출(신고/신청) 내역

'서식별내역'의 작성란 작성"(폐기물 코드, 종류, 위탁자 등)

임시저장 | 민원신청

공통 내역 | 서식별 내역

▪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별지12호)

(처리기간 : 5 일)

● 주원료명		● 주생산품명	
● 주원료 사용량	Ton	● 주생산품 생산량	Ton
●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불러오기 | 입력 | 행 복사 | 입력내용 확인

상태	삭제	폐기물					배출량				*배출주기
		*올바로코드	분류번호	*종류	폐기물상세명	*성질 · 상태	*월배출량	*단위	*연배출량	*단위	
입력		010299	01-02-99	그 밖의 공정오		고상	2,000	kg	24	Ton	수시
입력		020101	02-01-01	폐염산		액상	100,000	kg	1,200	Ton	수시
입력		020101	02-01-01	폐염산		액상	100,000	kg	1,200	Ton	수시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수집·운반업 허가 관련 사항

-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장비	주차장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 3대 이상 ·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	· 기준 없음
1	2	3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수집·운반업 허가 관련 사항

-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3조)

변 경 허 가

1.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2. 영업구역의 변경
3.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만 해당)
4.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변 경 신 고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집·운반의 경우>

1. 의료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포장된 상태로** 수집·운반하여야 함
2.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은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가 설치되고, **수집·운반 중에는 적재함의 내부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3. 흩날림, 유출 및 악취의 새어 나옴을 방지할 수 있는 밀폐된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함
4. 적재함의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약물소독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그 안에 온도계를 붙이고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5.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6.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여야 함
7. 적재함의 양쪽 옆면 → 의료폐기물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 표기(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

   적재함의 뒷면 → 의료폐기물 도형 표기(가로·세로 각각 50cm 이상)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보관의 경우>

1. 보관기간

구분(의료폐기물) / 종류		보관시설	배출자 보관기간	수집·운반업자 (임시보관)
격리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 - 전용 냉장시설(4℃ 이하) ○ 그 밖의 폐기물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7일	2일 이내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 전용 냉장시설(4℃ 이하) ※ 치아 및 방부제에 담긴 폐기물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15일 ※치아:60일	○ 섭씨4도 이하 전용보관시설 보관 [5일 이내] ○ 그 밖의 보관시설 보관 [2일 이내]
	조직물류 (재활용하는 태반)	○ 전용 냉장시설(4℃ 이하)	15일	
	병리계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15일	
	손상성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30일	
	생물·화학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15일	
	혈액오염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15일	
일반의료폐기물		○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	15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보관의 경우>

2. 보관시설

-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 유지
- 약물소독에 쓰이는 소독약품 및 분무기 등 **소독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 설치**
-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시설의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 보관장소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 제한**
-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표지판 설치**

폐기물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공통사항>

1.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같은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됨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2. 폐기물 위(수)탁운반(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배출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처분단가 또는 재활용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위탁자별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을 보내야 함
4.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
5. 허가취소·영업정지·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못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허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공통사항>

7. 휴업, 폐업, 처리능력의 초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위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8. 별표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함
9.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비상 시 연락처와*** 사고 발생 시 근무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적은 ***사고대응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대응요령을 숙지하도록 하여야 함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폐기물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사고대응매뉴얼 예시(유해폐기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가이드라인)

나. 수집·운반 사고에 대한 조치

1) 상·하차과정 유출 사고

○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한다

○ 파손된 의료폐기물 용기에 소독액을 뿌린 뒤 용기를 준비된 비닐백에 담는다.

○ 유출된 폐기물은 신속히 회수하고 액체를 최대한 흡수시킨 후 소독한다.

○ 유출된 바닥 부분은 소독액을 사용하여 닦는다.

○ 사고현장에서 회수한 폐기물, 개인보호장구와 사용한 흡수재, 청소에 사용한 도구 등을 비닐백에 담아서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우선적으로 소각처분한다.

○ 유출된 폐기물에 직접 노출된 작업자는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2) 차량의 이상징후 및 가벼운 접촉 사고

○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다른 차량의 접근을 통제한다.

○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적재된 의료폐기물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이때, 일부 용기가 파손되었다면, 비치된 약물소독재를 이용하여 소독하고 비닐백에 담는다.

○ 사고지역 인근을 통과하는 차량은 에어컨 및 히터를 끄고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을 신속히 통과하도록 유도한다.

○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운전자는 안전삼각대 및 외부유출 알림 및 통제 알림판을 설치 한 후, 흡수재를 이용하여 누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우·배수로 등 폐기물 외부 유출이 가능한 통로를 차단한다.

○ 유출된 폐기물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신속하게 회수하여 비닐백에 담아 밀폐 포장한다.

○ 유출된 바닥 부분은 소독액을 사용하여 닦는다.

○ 사고현장에서 회수한 폐기물, 개인보호장구와 사용한 흡수재, 청소에 사용한 도구 등을 비닐백에 담아서 의료폐기물소각장에서 우선적으로 소각처분한다.

○ 유출된 폐기물에 직접 노출된 작업자는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3) 전복 등 충돌사고 시

○ 신속히 차량 밖으로 탈출하여 신고한다(관할환경청, 관할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 관할 환경청 등은 제6장 사고발생시 대응 및 보고를 준용하여 환경부 보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가동

○ 화재나 연류 유출 등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면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화한다.

○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충분한 안전지역을 설정하여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 희생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구조하고 필요한 경우 사람들을 대피시킨다.

○ 사고현장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풍향방향에서 진입한다.

○ 의료폐기물 외부 유출이 있는 경우, 차량에 비치된 흡수제 *를 이용하여 누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우·배수로 등 폐기물 외부유출이 가능한 통로를 차단한다.
※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건조된 흙이나 모래

폐기물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사고대응매뉴얼 예시

○ 의료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운전자는 안전삼각대 및 외부유출 알림 및 통제 알림판을 설치 한 후, 흡수재를 이용하여 누출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고, 우·배수로 등 폐기물 외부 유출이 가능한 통로를 차단한다.

○ 유출된 폐기물은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신속하게 회수하여 비닐백에 담아 밀폐 포장한다.

○ 유출현장은 소독제를 이용하여 철저히 소독한다.

○ 사고현장에서 회수한 폐기물, 개인보호장구와 사용한 흡수재 등을 비닐백에 담아서 의료폐기물 운반업체를 통해 수거하고 의료폐기물소각장으로 운송하여 우선적으로 소각한다.

○ 유출된 폐기물에 직접 노출된 사람은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다.

- 사고경위 및 처리과정을 기록하여 회사 및 환경청에 보고한다. 보고 내용은 사고의 경위와 개요, 장소와 시간, 사고와 관련된 종사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을 조사하고 대처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전복, 추락 등으로 아래와 같은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에 해당(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조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② 그 밖에 전항①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폐기물의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분단가나 재활용단가(또는 처분비나 재활용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아서는 아니 됨**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됨**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의료폐기물 관련 주요 위반사례

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기재
(위반내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연월일 미기재**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행정처분) 과태료 100만원

2. 보관기준 위반(1)
(위반내용) **격리의료폐기물의 보관기관(7일) 초과**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행정처분) 과태료 200만원

3. 보관기준 위반(2)
(위반내용) **봉투형용기 용량의 75퍼센트 초과 보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행정처분) 과태료 400만원

4. 보관표지판 부실 기재
(위반내용) **임시보관장소 보관표지판에 일부내용(보관기간, 업소별 수탁량) 미기재**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행정처분) 과태료 100만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의료폐기물 관련 주요 위반사례

5.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위반내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행정처분) 과태료 400만원

6.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위반내용) **혈액 함유 투석용 필터를 합성수지류 용기가 아닌 골판지류 용기에 보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행정처분) 과태료 300만원

7. 수집·운반차량 냉장시설 미가동
(위반내용) **운반차량 적재함(4℃이하 냉장보관 기준)에 설치된 냉장시설 가동하지 않은 채로 운행**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500만원

지정폐기물 관련 벌칙 사항

구분	위반 조항		위반내역	벌칙	비고 (행정처분 등)
공 통	법 제8조제1항 또는 2항 (폐기물의 투기 금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매립·소각	7년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 취소
	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보관기간 초과(1개월 미만)	과태료 200만원	폐기물 흘러나간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그 밖의 경미한 사항 : 경고
			보관기간 초과(3개월 미만)	과태료 400만원	
			보관기간 초과(3개월 이상)	과태료 1,000만원	
			종류별·성상별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보관시설 또는 용기 부적정	과태료 300만원	
			보관표지판 미설치 및 표지판 허위 또는 부실 작성	과태료 100만원	
			기타 보관기준 및 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법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항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항	인계내역 전산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과태료 500만원	경고 (미입력 시)
			인계내역 기간내 전산 미입력(입력기한초과) 또는 부실 입력	과태료 50만원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 (담당자 교육)		기술요원, 폐기물처리담당자 미교육	과태료 50만원	
	법 제36조제1항 (장부등의 기록 보존)		관리장부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허위 기록	과태료 100만원	경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관련 벌칙 사항

구분	위반 조항		위반내역	벌칙
수집·운반업자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적정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의료폐기물 전용운반차량 미사용	과태료 300만원
			폐기물 누출 또는 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과태료 300만원
			수집·운반증 미부착 또는 미휴대	과태료 200만원
			그 밖의 수집·운반기준 위반	과태료 400만원
		제2항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과태료 300만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관련 벌칙 사항

구분	위반 조항		위반내역	벌칙
수집·운반업자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3항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미입력 또는 거짓 입력	과태료 500만원
			폐기물 인계·인수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간내에 미입력	과태료 50만원
			폐기물 인계·인수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부실 입력	과태료 50만원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제9항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	과태료 300만원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	과태료 500만원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과태료 300~500만원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제40조 (방치폐기물 처리)	제1항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 1,000만원
		제7항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감사합니다